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. 12. 1 선고 2022가단114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11. 10.

판 결 선 고 2022. 12. 1.

주 문

1. 군산시 D 대 169㎡ 중 7/14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E 사이에 2020. 11. 13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E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. 11. 26. 접수 제45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사실관계

가. 원고는 2010. 8. 7. E과 사이에 대출한도는 1,000만 원, 이자율은 변동형 기준금리 + 3.5%, 지연배상금률은 최고 연 21%, 대출 기간은 2012. 8. 17.까지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. 그 후 위 대출거래약정은 대출한도가 900만 원으로 감액되어 2022. 8. 17.까지 자동연장되었으나, E은 2021. 2. 28.경 대출한도초과와 이자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그 당시 대출 원리금은 합계 9,074,280원이다.

나. 한편 E은 2020. 11. 13. 딸인 C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군산시 D 대 169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 중 7/14 지분을 증여하고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고 한다), 같은 달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, 채무자인 E이 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를 심화시킨 행위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E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에 가까운 2021. 1. 1.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9,142,900원이고, 그중 E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4,571,450원(= 9,142,900원 × 7/14 지분)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의 공유지분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E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강호